

의안 번호	148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: 2000. 4. .  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2000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 1차변경안

### 1. 제 안 이 유

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「2000년 공유 재산관리계획안」에 대하여,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평창군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첨부된 안과 같이 제안합니다.

### 2. 주 요 골 자

2,000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은 농업기술센터의 예찰답 취득 1건 8필지 15,001㎡ 입니다.

기존 종부리 예찰답이(종부리 508-8번지 외3필지 6,614㎡) 가로등,식당,의료원 등으로 예찰기능이 상실되어 의료원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고,

후평리에 새로이 8필지 15,001㎡ 규모의 예찰답을 매입하여 5,955㎡는 기본 예찰 및 시험포로 사용하고, 9,046㎡는 우량품종 증식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.

### 3 관계법규 및 지침(발체)

- 가.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
- 나.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
- 다.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

# 총괄표 (7-1)

회계명: 일반회계 (의회결의 대상)

(단위: m<sup>2</sup>, 천원)

구분		합계			당초			1차 변경 계획			
		건수	수량	금액	건수	수량	금액	건수	수량	금액	
취득	합계	토지	2	18,152	120,534	1	3,151	24,606	1	15,001	95,928
		건물	4	2,074	2,513,241	4	2,074	2,513,241			
		기타									
	매입	토지	2	18,152	120,534	1	3,151	24,606	1	15,001	95,928
		건물									
		기타									
	교환	토지									
		건물									
		기타									
기타	토지										
	건물	4	2,074	2,513,241	4	2,074	2,513,241				
	기타										
처분	합계	토지									
		건물									
		기타									
	매각	토지									
		건물									
		기타									
	교환	토지									
		건물									
		기타									
	기타	토지									
		건물									
		기타									

## 2000년도 취득재산 목록(7-2)

회계명: 일반회계

(단위: m<sup>2</sup>, 천원)

번호	재산의 표시			추정가액	취득 시기	취득 사유	소유자
	지목	소재지	수량				
합계		8 필지	15,001	95,928			
1-1	답	후평리 572	1,896	10,693	하반기	예찰시험답, 증식포	이영식
-2	"	후평리 572-1	1,024	5,775	"	"	"
-3	"	후평리 610	3,132	20,483	"	"	"
-4	"	후평리 611	2,660	17,077	"	"	"
-5	"	후평리 611-1	334	2,184	"	"	"
-6	"	후평리 616	2,315	15,140	"	"	이영화
-7	"	후평리 616-1	672	4,394	"	"	이영욱
-8	"	후평리 617	2,968	20,182	"	"	"

# 관 계 법 규 (발취)

## 지 방 재 정 법

- 제77조(공유재산 관리계획):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-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및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지 방 재 정 법 시 행 령

- 제84조(공유재산 관리계획): ②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으로 한다.
1.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---(시군의 경우 1억원이상)---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개별공시지가로 하고,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.
  2. 토지에 있어---취득의 경우 1건당 (1,000㎡ 이상)---.

## 공 유 재 산 관 리 조 례

- 제7조(공유재산심의회): ①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의1과 같다.
1. 공유재산의 취득, 처분에 관한 사항
  2.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##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지침

### 4. 재산의 취득기준

가. 2000년도에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다음의 중요재산이 대상이 된다.

- 매입, 기부채납, 신축, 증축, 양여취득, 교환, 무상귀속 등

